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,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4. ~ 11. 14, 2022. 10. 7.~ 11. 16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3조제3호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”를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건설기계대여업체(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,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,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)

원도급 업체명	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	건설기계대여업체		건설기계 대여내용		
	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⑯건설기계명	⑰대여기간	⑱대여금액
	[]사용 []미사용(□시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	[]사용 []미사용(□시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
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건설기계대여업체(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,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,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)

하도급 업체명	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	건설기계대여업체		건설기계 대여내용		
	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⑯건설기계명	⑰대여기간	⑱대여금액
	[]사용 []미사용(□시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	[]사용 []미사용(□시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
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직접시공계획란 중 “⑧하도급(예정) 금액 합계”를 “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”로 하고,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중 “노무비”를 “노무비 포함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4호 중 “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⑦)와 하도급(예정)금액의 합계(⑧)”를 “⑦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직접시공 노무비)와 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”로, “총 노무비(⑤)”를 “⑤총 노무비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중 “법인(주민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”로 하고, “주소”를 “영업장 소재지”로 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 중 “법인(주민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”로, “주소”를 “영업장 소재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2조(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)	제22조(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)	제22조(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)		
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	①-----	①-----		
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	-----	-----		
업자는 매년 2월 15일(제2항제2	-----제2항제3	-----제2항제3		
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	호-----	호-----		
월 15일, 개인은 5월 31일, 「소	-----	-----		
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	-----	-----		
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	-----	-----		
6월 30일)까지 별지 제18호서식	-----	-----		
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(전	-----	-----		
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	-----	-----		
다)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	-----	-----		
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	-----	-----		
제출해야 한다.	-----.	-----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33조(전문경영진단기관) 법 제4	제33조(전문경영진단기관) -----	제33조(전문경영진단기관) -----		
9조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	-----	-----		
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	-----	-----		
호의 요건을 말한다.	-----.	-----.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삭 제				
3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	3. -----	3. -----		
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「중소	----- 「경영	----- 「경영		
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	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	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		

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	<u>법률」 제8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